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35

2025/6

발행인 조정희 | 총괄 박수진 | 감수 윤성순 | 담당 김지혜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67)

Contents

국제기구

국제사법재판소 2
 ICJ 육지 및 해상경계 확정과 섬에 대한 주권 사건(가봉/적도 기니) 본안 판결

상설중재재판소 5
 PCA 상설중재재판소, 영국-모래뱀장어 어업 분쟁 판정 결과 발표

지역별 동향

유럽 8
 EU EU 해양생물 보호 및 블루이코노미 강화를 위한 해양협정 채택

인도양 12
 모리셔스 모리셔스-영국, 차고스 제도 협정 체결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7





국제사법재판소

ICJ

전문연구원 황수연

육지 및 해상경계 획정과 섬에 대한 주권 사건(가봉/적도 기니) 판결

사건 개요

2025년 5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아프리카 서부연안의 인접국인 가봉(Gabon)과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¹⁾가 제기한 해양 및 육지 경계 획정, 도서의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해당 분쟁은 주로 석유 등 해양자원 개발권, 육·해상의 경계선 위치, 그리고 3개 도서(또는 암초) Mbanié/Mbañe(음바네), Cocotiers/Cocoteros(코코티에르/코코테로스), Conga(콩가)²⁾의 법적 지위와 영유권 귀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림 1. 프랑스-스페인 공동 경계 위원회(1886~1891년) 논의 시 작성된 프랑스 측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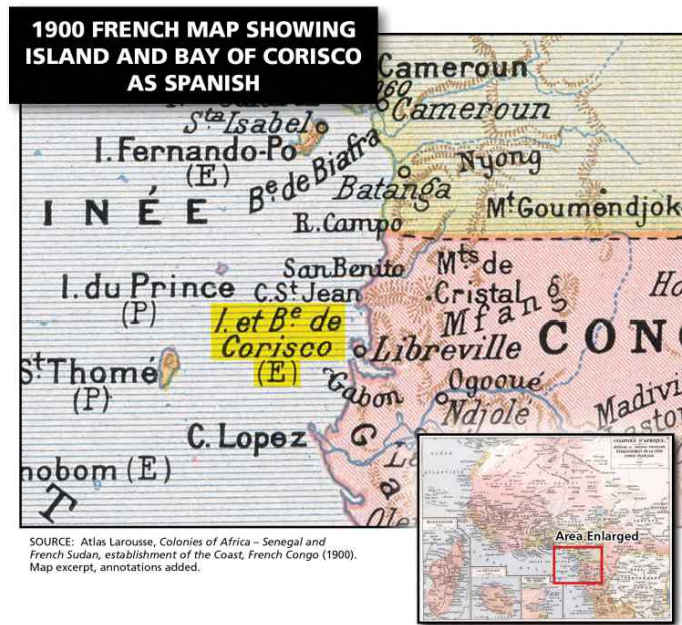


Figure R4.1

※ 적도 기니는 ICJ에 해당 지도를 분쟁 대상인 3개 도서가 스페인의 관할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ICJ는 프랑스-스페인 공동 경계 위원회(Franco-Spanish Mixed Commission)의 논의와 당시 작성된 프랑스 측 지도에 Mbanié/Mbañe(음바네)를 스페인 식민지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 출처: ICJ, REPLY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VOLUME I), 그림 R4.1

1) Land and Maritime Delimitation and Sovereignty over Islands(Gabon/Equatorial Guinea)
 2) 각 당사자(가봉/적도 기니)의 해상 지형물에 대한 법적 명칭을 병행 표기하였다. 3개 도서는 모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매우 작은 지형물이지만 해양 경계 및 자원권 설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주요 판결 내용

(1) **법적 권원으로서의 조약과 국제 관습의 효력:** ICJ는 1900년 파리에서 체결된 ‘프랑스-스페인 서아프리카 식민지 경계협정(1900 Convention)’을 유효한 법적 권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양국이 독립 시 계승한 권한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가봉이 주장한 1974년 바타협정(Bata Convention)³⁾은 체결 과정, 양국의 후속 조치 부재 등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하였다.

(2) **해양 경계 획정 원칙:** ICJ는 양국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다. 재판부는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간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였고, 특히 양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중간선이 분쟁 지역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양국의 역사적 관할 실태, 해양이용 실태, 해안선의 길이 및 형태, 도서의 위치와 성격 등 특별한 사정(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3단계 접근법(three-stage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1900년 협정상 육지 경계의 종점을 해양 경계의 기점으로 인정하였다.

(3) **도서의 법적 지위 판정: ‘섬(island)’ vs ‘암초(rock)’:** 핵심 분쟁 대상인 3개 해상 지형물의 법적 성격에 대해 ICJ는 각 지형의 자연적 조건, 조간대 침수 여부, 독자적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단순한 바위(rock)가 아닌 법적 의미의 ‘섬(island)’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3개의 도서는 영해(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설정 권리를 갖는 지형물로 인정되었다.

(4) **도서의 영유권 결정(역사적 통치 실태와 계승 여부):** ICJ는 3개 도서는 스페인 통치 당시 코리스코(Corisco) 섬의 부속 도서로 간주되었고⁴⁾, 이에 따라 1968년 독립 시 적도기니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계승했다고 판단하였다.

3) 1974년 바타협정(Convention demarcating the land and maritime frontiers of Equatorial Guinea and Gabon)은 1974년 적도기니와 가봉이 코리스코(Coricoco), 음바네(Mbanie), 코코티에르(Cocotiers) 도서 등의 양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의 평화적 공동 관리를 위해 체결한 양자간 협정이다. 협정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협정에서 양국은 영해 및 대륙붕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쟁 여지가 있는 해역에 대해 해양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공동개발지역(Zone of Cooperation)을 설정하여 개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가봉이 이를 실질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고 코코티에(Cocotiers) 등 일부 도서에서는 스페인-가봉간의 해상 의정서(Maritime Protocol, 1962년)를 체결하여 스페인이 해당 도서의 등대를 포함한 코리스코(Corisco)만에서 해상 신호기를 유지할 권한을 인정했다.(para.196)



또한 3개 도서에 대한 역사적 점유 실태, 행정적 통제 및 사용 실태, 관할권 행사 여부를 비교한 결과, ICJ는 적도기니 측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ICJ는 Mbanié/Mbañe(음바네), Cocotiers/Cocoteros(코코티에르/코코테로스), Conga(콩가) 3개 도서에 대한 적도기니의 영유권을 13대 2의 찬반 의견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도서들은 적도기니의 주권 하에 귀속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가봉/적도기니 사건은 해양 영토 분쟁에서 지형물의 법적 지위와 역사적 사용 실태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이다. 이번 판결에서 UNCLOS 제121조에 따른 ‘섬’의 요건(조위 침수 여부, 인간 거주 가능성, 독립적 생존능력 등)은 EEZ 설정의 기초가 되며, 실제적 경제적 기능보다 자연지리적 특성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이 재확인했다. 또한 역사적 점유 및 행정적 지원의 증거로 단순한 ‘지도상 표시’나 법적 주장보다 현실적인 통치의 증거(공공 서비스 제공, 법 집행, 주민 활동 등)가 영유권 판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도, 이어도, 서해 NLL 등과 같이 지정학적·법적 관심이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해양법상 지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 축적과 정교한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접국과의 관할수역이 중첩될 수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일관된 원칙 설정, 특히 중간선 원칙 적용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며, 행정적·실질적 관리 활동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출처 : [1] 국제사법재판소, Land and Maritime Delimitation and Sovereignty over Islands (Gabon/Equatorial Guinea) Judgment of 19 May 2025,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79/179-20250519-jud-01-00-en.pdf>(검색일: 2025.6.24.)

[2] 국제사법재판소, Press release 2025/27,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79/179-20250519-pre-01-00-en.pdf>(검색일: 2025.6.24.)

[3] 국제사법재판소, Reply of Equatorial Guinea(5 October 2022) Volume II - Maps, figures, photographs and videos,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79/179-20221005-wri-01-01-en.pdf>(검색일: 2025.6.24.)

[4] 유엔, <https://treaties.un.org/Pages/showDetails.aspx?objid=0800000280077e4b>(검색일: 2025.6.30.)



상설중재재판소

PCA

전문연구원 김지혜

상설중재재판소, 영국-모래뱀장어 어업 분쟁에 대한 판정 발표

사건 개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지난 4월 28일 영국-모래뱀장어 어업분쟁에 대한 판정⁵⁾을 발표했다. 본 사건은 영국이 취한 북해 영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뱀장어에 대한 어획금지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이 EU-영국 무역 및 협력 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⁶⁾ 제739조를 발동하여 제소 한 것으로, TCA 적용에 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자문, 비례성 원칙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림 2. 모래뱀장어



그림 출처: Scottish Government(2025.6.20.)

사건 배경

모래뱀장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 체결한 EU-영국 무역 및 협력 협정(TCA) 제495조 제1항에 따라 공유 어족자원(shared stocks)으로 분류되며, EU와 영국이 매년 총 어획할당량을 상호 합의하여 배분한

5) PCA Case No. 2024-45,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739 of the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 United Kingdom for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9 April 2025

6)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f the other part' (2020),



다. 영국과 EU는 어획량을 설정함에 있어, 국제해양과학협의회(ICES)라는 정부간 해양과학기구의 과학적 자문을 제공받고 있다.

2024년 3월 26일 영국은 모래뱀장어 자원량을 증가시켜 바닷새, 해양포유류 및 기타 어종에 대한 먹이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적·생태적 상태 개선을 위해 공청회 절차를 거쳐 북해의 잉글랜드 해역 및 스코틀랜드 전 해역에서 모래뱀장어 어획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잉글랜드 해역에서의 어획금지 조치는 2020년 「어업법」에 따라 해양관리기구가 어선에 부여한 허가의 변경 사항을 명시한 법정 지침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스코틀랜드 해역에서의 어획금지 조치는 1967년 「바다어류보존법」 제5조 제1항(A호)에 따라 제정된 ‘2024년 모래뱀장어 어획 금지(스코틀랜드) 명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영국의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은 2024년 4월 16일 TCA 제738조에 근거하여 영국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10월 25일 TCA 제739조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설립을 요청하는 서면을 영국에 전달하였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조치가 3가지 측면에서 TCA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자문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제494조 제3항(C호)에 명시된 원칙과 함께 고려했을 때 TCA 제496조 제1항 및 제2항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TCA 제494조 제3항 f호에 명시된 비례성과 비차별성 원칙을 함께 고려했을 때 제496조 제1항과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영국의 어획금지 조치는 TCA 부속서 38(수역 접근에 관한 의정서) 제2조 제1항 a호에 따라 조업을 위해 수역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 부여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판정 내용

총 3인으로 구성된 상설재판소 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우선, 유럽연합의 첫 번째 주장은 기각되었다. 판정부는 모래뱀장어 어획 금지 조치가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자문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점을 유럽연합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판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의 모래뱀장어 관련 공청회에서 참고된 문서에 일부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결함이 그 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두 번째,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해역과 스코틀랜드 해역 조치에 대해 달리 판정하였다. 우선, 잉글랜드 해역 조치에 대해서는 EU 어업권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금지



결정을 내려 비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TCA 제496조와 제49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해역 조치에 대해서는 생태계 복원 시기를 고려하고, 어업·가공 산업 피해와 해조류·조류 생존 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정부는 어획금지 조치 자체 및 그 적용에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비차별 원칙 위반은 없었다고 판정하였다.

셋째, 잉글랜드 해역 조치의 TCA 위반이 성립됨에 따라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부속서 382(1)(a) 조항 위반도 함께 인정하였다.

시사점

본 판정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력협정의 적용에 관한 첫 번째 중재재판소 판정으로 향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 어업이나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절차적 및 해석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정은 향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및 수산 분쟁에서 국가의 규제 자율성과 조약 의무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1] PCA, “In the Manner of an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739 of the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uling, 28 April 2025

[2] Panos Koutrakos, “The first UK-EU Arbitration Ruling under the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he sandeel fishing ban”, <https://eurelation.com/blog/the-first-uk-eu-arbitration-ruling-under-the-trade-and-cooperation-agreement-the-sandeel-fishing-ban>(검색일: 2025.6.20.)



유럽
EU

전문연구원 황수연

EU 해양생물 보호 및 블루이코노미 강화를 위한 해양협정 채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6월 5일,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 해양협정 (The European Ocean Pact)」(이하 해양협정)을 공식 채택했다. 본 협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해양 생태계 보전, 블루이코노미 강화, 해안 및 도서 지역 사회의 회복력 증진을 포괄하는 전략적 지침으로 가능하며, 향후 EU의 해양 관련 정책·제도 통합 및 실행을 위한 방향성과 국제적 협력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그림 3. EU 법률 및 정책의 해양 관련 구속력 있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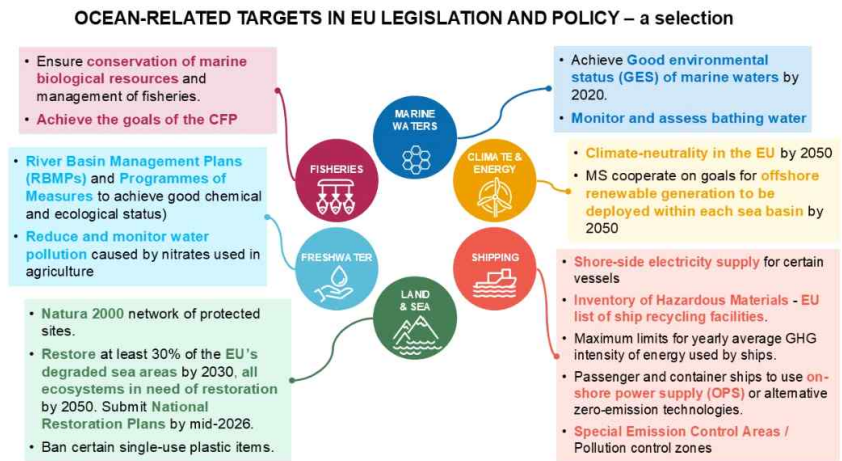


그림 출처: COM(2025) 281 final

유럽 해양협정(The European Ocean Pact) 주요 내용

해양협정에는 총 6가지 핵심 우선순위와 각 항목별 정책, 기술, 지역사회, 산업, 안보, 거버넌스와 연계된 실행계획, 추가 조치 및 이행 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EU는 본 협정에 근거해 해양 생태계 복원과 보호 강화를 위해 해양전략기본지침(MSFD: the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및 해양공간계획지침(MSPD: the Maritime Spatial Planning Directive)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연안·해양 서식지의 복원, 해양보호구역(MPA)의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는 2026년 어업, 양식업, 항만, 해양산



업 전반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7년 청년 세대의 해양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블루 세대 갱신 전략(Blue Generational Renewal Strategy)’을 도입한다. 그리고 해안 및 도서, 최외곽 지역의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지역 맞춤형 전략과 함께 ‘블루 카본 보호구역’의 설립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의 해양 기반 전환을 지원한다. EU는 2030년까지 ‘유럽 해양 디지털 트윈(DTO: European Digital Twin of the Ocean, 이하 DTO)’⁷⁾을 구축하여 해양 관측, 데이터 통합,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과 위성 기반 관측기술을 활용한 해양 관리 체계를 실현한다.

본 해양협정에는 해양안보와 감시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EU는 해양을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또는 생태적 공간이 아닌 전략적 안보 공간으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해양안보 체계의 강화를 명확히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발트해와 북해 등 EU 회원국의 관할 수역 내 불법탄 제거 전략, 인프라(해저 통신케이블, 에너지 연결망 등) 보호, 해상 감시 강화를 위한 무인 드론 함대 시범 운영, 무인 감시 기술 도입, 유럽 해역의 통합 해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EU 해안경비대(Coast Guard) 간 공동작전 등 주요 실행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는 관할 수역 내 최외곽 지역과 도서 지역을 단순한 주변부가 아닌 해양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여 도서 지역에 대한 안보·환경·경제 통합 관리 역량의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 지역 전략’ 및 ‘최외곽 지역 전략’의 업데이트가 추진되며, 블루이코노미 기반 자립, 블루 카본 보호구역 설정, 해양 생물다양성 관리 거점화, 기후 회복력 있는 공동체 육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디지털 인증 시스템인 ‘IT CATCH’⁸⁾의 도입을 의무화하며, 어획물 인증 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IUU 근절을 목표로 한다.

7) 해양 디지털 트윈(DTO: Digital Twin of the Ocean)은 실제 해양환경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모사하여, 해양 생태계 변화, 인간 활동, 정책 개입의 영향을 실시간 또는 예측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모델을 의미한다. 이는 위성, 센서, AI 기반 데이터, 해양 관측자료, 예측 모델 등을 통합하여 바다의 다차원적 상태(예: 수온, 염분, 해양생물, 오염물질 분포 등)를 가상환경에서 재현한다.

8) 유럽연합(EU)은 2026년 1월 10일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IT 기반의 CATCH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모든 어획 증명서와 관련 문서는 CATCH를 통해 제출 및 검증되어야 하고 기존 종이 기반 문서는 2028년 1월 10일까지 유효되며, 이후에는 디지털 방식만 허용된다. 또한 가공 진술서(Processing Statement)가 확대 적용되어 기존에는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만 요구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모든 가공 수산물에 대해 가공 진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 외 수산물이 제3국을 거쳐 EU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제품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조작 진술서(Non-Manipulatio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해양법(Ocean Act) 제정과 해양공간계획지침(MSPD)의 개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고위 정책조정기구인 해양위원회(Ocean Board)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 실적과 목표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Ocean Pact Dashboard'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는 해양정책 전반의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 외 플라스틱 쓰레기 및 영양염류 오염 감축, 해양소음 저감 등 환경 관련 국제협약과의 연계도 병행 추진된다.

표 1. 유럽 해양협정 6대 우선순위 및 주요 실행 과제

6대 우선순위	주요 실행 과제
1. 해양 생태계 복원 ·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전략기본지침(MSFD), 해양공간계획지침(MSPD) 개정 - 해양보호구역(MPA) 확대 및 관리 강화 - 파괴적 어업·해양오염 저감 조치 추진
2. 지속가능 블루이코노미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어업정책(CFP) 평가 및 2040년 비전 수립 - 해양산업 전략 및 EU 항만 전략 개발 - 지속가능 관광 전략 및 블루 세대 갱신 전략 추진
3. 해안·도서·최외곽 지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맞춤형 연안 공동체 개발 및 회복력 전략 수립 - 도서 지역사회·최외곽 지역 대상 재정·제도적 지원 - '블루 탄소 보호구역' 설립 추진
4. 해양 연구, 지식, 기술 및 혁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해양 관측 이니셔티브 가동 - 2030년까지 DTO(European Digital Twin of the Ocean) 운영체계 구축 - 해양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EU 해양 청소년 및 세대 간 네트워크를 구축
5. 해양안보·감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해양 경비대 및 해군 협력 강화, 해상 감시 강화 - UXO(불발탄) 제거 전략 수립 및 실행(발트해·북해 등) - AI 기반 무인 드론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유럽 무인 드론 함대(UxV) 시범 운영) -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와 새로운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 협력 강화
6. EU 해양 외교와 국제법 기반 거버넌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월부터 IUU 어업 방지를 위한 IT CATCH 시스템 의무화 - 유엔 BBNJ 협정의 신속한 비준 및 이행 지원(개도국에 4천만 유로 기부)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체결 및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협상 주도 - 유해어업보조금 금지에 관한 WTO 협정 1단계 발효 및 이행, 미해결 조항에 관한 2단계 협상 종결 - 국제 해양 지속가능성 플랫폼(IPOS) 시범 운영

표 출처:
European
Ocean Pact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

정책적 시사점

이번 해양협정은 유럽연합이 해양 정책의 통합과 구체화를 시도하는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환경, 산업, 안보, 지역사회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전략 틀로 통합하며, 해양 거버넌스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해양 구축과 IUU 대응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의 정책화가 돋보인다. 또한, 해안 및 도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젊은 인재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해양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유엔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남극해 보호 전략 등과 연계되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협정은 현재는 법적 구속력과 강제이행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⁹⁾ 특히 해양보호구역(MPA) 내 저층어업 등 파괴적 어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유럽 해양협정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해양 법제 및 전략 프레임워크의 체계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위급 정책 거버넌스 기구(Ocean Board)나 실적 대시보드 운영 방식은 정부 정책 집행 체계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해양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DTO 구축 및 IUU 전산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스마트 해양 관리 체계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회복력 정책, 블루이코노미 육성 전략 등은 지역 기반 정책 개발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EU와의 디지털 감시·환경 협력 확대에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출처 : [1] 유럽위원회, https://maritime-forum.ec.europa.eu/news/commission-adopts-european-ocean-pact-protect-marine-life-and-strengthen-blue-economy-2025-06-06_en(검색일: 2025.6.23.)
[2] 유럽위원회, COM(2025) 281 final,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Ocean Pact
[3] European Ocean Pact 공식 웹사이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european-ocean-pact_en(검색일: 2025.6.23.)
[4] 유럽위원회(2025.6.5). Commission adopts European Ocean Pact to protect the ocean and boost blue economy(검색일: 2025.6.23.)
[5] Digital Twin Ocean, https://digitaltwinoccean.mercator-ocean.eu/?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6.23.)
[6] 유럽위원회,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fisheries-control-system-gets-major-revamp-2024-01-09_e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6.23.)

9) 본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해양공간계획(MSP) 지침 개정안에 근거하여 해양법(Ocean Act)을 제안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인도양

모리셔스-영국

전문연구원 김지혜

모리셔스-영국, 차고스 제도 협정 체결

지난 5월 22일에 영국과 모리셔스가 차고스 제도 협정¹⁰⁾을 체결했다. 본 협정에 따라 영국은 모리셔스에게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이양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섬의 군사 기지에 대해서는 향후 최소 99년 간 미국과 영국이 공동 군기지 운영권을 전적으로 갖는 대가로 연 1억 100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했다. 해당 협정은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체결 배경

차고스 제도는 6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 인도 남단과 몰디브 남쪽의 인도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1814년 프랑스로부터 영국에 할양된 이후 1965년까지 영국 통치 하에 있었다.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미군 군사 기지가 위치해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미국의 중동, 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지원해 왔다. 영국은 1965년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3년 전 이었던 시점에 차고스 제도를 당시 식민지였던 모리셔스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를 ‘영국령 인도양 지역(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IOT)’이라 명명하였으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2,000여 명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모리셔스가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양국 간에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포함한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왔다. 최근 몇 년간 모리셔스는 이 분쟁을 국제법원과 중재재판소를 통한 청구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11년 모리셔스는 영국이 차고스 군도에 일방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중재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는 영국이 MPA를 설정한 방식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모리셔스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1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concerning the Chagos Archipelago including Diego Garcia



조치는 협약 제194조(환경 보호) 및 제300조(선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제시한 차고스 제도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할 당시, 모리셔스의 탈식민화 과정은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고, 영국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행정권을 가능한 한 신속히 종료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모리셔스의 탈식민화를 완료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할 의무가 있었다.

그림 4. 차고스 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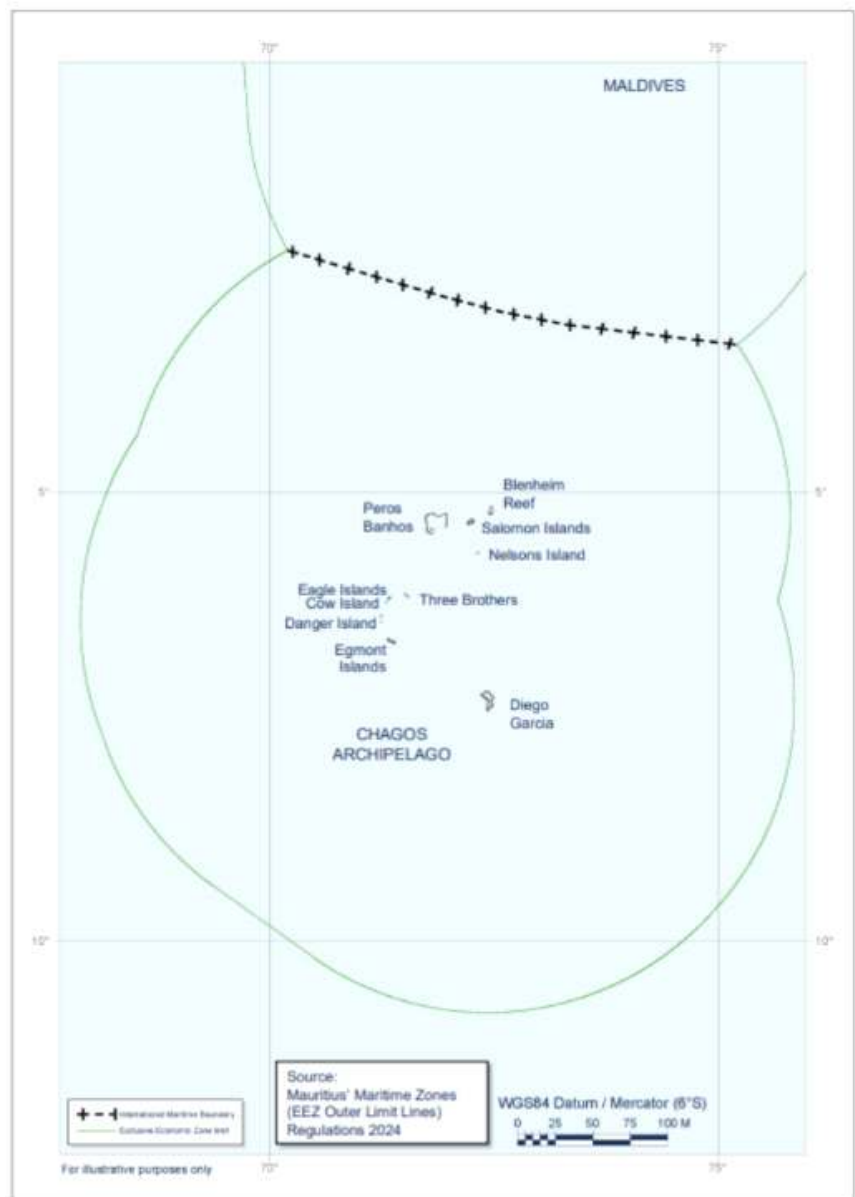


그림 출처: 영국-모리셔스 차고스 제도 협정 부속서 5

이후 유엔총회는 결의안 73/295을 채택하여 ICJ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



하며, 각 전문기구들이 차고스 제도가 ”모리셔스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양국은 2022년 11월 차고스 제도의 주권 행사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5월 22일 최종 타결되었다.

주요 내용

영국과 모리셔스 간 체결된 차고스 제도 협정은 전체 19개 조항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 내용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모리셔스 주권, 환경, 차고스 제도 재이주 프로그램, 국제적 책무, 체제 및 조직, 모리셔스 인력 및 계약업자, 비용, 거버넌스·분쟁·종료·발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협정 제1조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포함한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은 모리셔스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조에서는 모리셔스가 주권국가로서 디에고 가르시아의 사용을 영국에 승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승인은 영국이 기지의 장기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부속서 1에 명시된 방위 및 안보 요건과 부속서 2에 명시된 관할권 관련 조치를 포괄한다. 영국은 미국이 해당 기지를 영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양 당사국은 협정의 조건에 따라 영국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모리셔스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영국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방위와 안보에 있어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1에서는 방위 및 안보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리셔스는 영국 및 미국의 항공기와 선박이 디에고 가르시아의 해역과 영공에 진입하는 데 있어 제한 없는 접근, 기지 이용, 상공 비행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영국이 기지 운영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 없는 권한을 갖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추가적으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제외한 차고스 제도 내 개발 또는 24해리 너머의 해양시설·인공섬·센서·기타 구조물 설치에 대해 모리셔스는 이를 승인 전에 제6항에 따른 안보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영국은 해당 제안 사항이 기지의 장기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위태롭게 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부속서 2에서는 영국이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군사기지 및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형사 및 민사상의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5조에서는 영국이 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디에고 가르시아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며, 모리셔스의 관련 환경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이 차고스 제도 내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에 있어서 모리셔스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 당사국은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포함한 환경 보호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1조와 협정에 첨부된 재정 관련 서한에 따라 영국 정부는 모리셔스에 대해 부담하기로 한 재정적 의무가 협정 발효 후 99년 간 연 평균 1억100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재정 패키지 비용은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약34억 파운드(한화 약 5.9조 원)으로 추정된다.

협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는 거버넌스·분쟁·종료·발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회의 안건 제안과 회의 참석자문 등의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결정은 양국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에 따르면, 협정은 99년간 유효하되, 양국이 만료 2년 전까지 연장 조건에 합의할 경우 추가로 40년 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은 향후 제3국보다 우선적으로 디에고 가르시아 사용권을 가질 '우선협상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우선 사안이 공동위원회에 회부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협의로 이어지며, 중대한 안보 이익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양국 총리가 직접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 협정 종료 사유 및 절차에 따르면, 모리셔스는 ① 영국이 제11조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영국 또는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에서 모리셔스의 국가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 발생 등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영국과 모리셔스 간 차고스 제도에 관한 협정은 오랜 기간 주권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주권 이양과 군사기지 공동 활용이라는 절충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2019년 ICJ 권고적 의견과 유엔 총회 결의(73/295)에 따라 모리셔스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제법적 정당성을 회복한 사례로 평가되며, 식민지 잔재 청산의 사례로서 유엔헌장 제1조 제2항과 자결권 원칙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대한 99년 임대권 보장과 영국의 방위·안보 책임 유지, 사법 관할권 확보 등을 통해 군사적 운영 주도권 유지에 성공하여 영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양국 간 협정은 국제법적 정의 회복, 전략 자상 유지 재정 보상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협정이 차고스인(Chagossians)의 귀환권·배상·문화권 보장이 미흡하고, 기지 임대 연장 여부, 영국 우선 사용권 실효성, 해양보호구역의 법적 구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향후 양국간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해결해야 과제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1] Mauritius No. 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concerning the Chagos Archipelago including Diego Garcia', 22 May 2025.
[2] Communiqué on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Partnership Framework between the 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 22 May 2025.
[3] AP, 'What to know about the deal to transfer sovereignty of the disputed Chagos Islands, May 23, 2025, <https://apnews.com/article/chagos-islands-mauritius-uk-deal-diego-garcia-81d046b333b0af81489ed75543f9534b>(검색일: 2025.6.5.)
[4] UK Parliament, 'UK-Mauritius treaty on the Chagos Archipelago', 26 June, 2025,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uk-mauritius-treaty-on-the-chagos-archipelago/>(검색일: 2025.6.26.)
[5] PCA Case No. 2011-03,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Mauritius v. United Kingdom)
[6] ICJ,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Advisory Opinion), 25 February 2019



3개월 내 행사계획

외교부-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 초청 공개 발표회

2025년 7월 9일 / 서울 외교부(정부서울청사별관)

- **주요 내용** 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제사법재판소: 최신 동향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

2025년 국제법평론회 하계학술대회 | 2025년 7월 25일 / 서울

- **주요 내용** ‘새로운 해양법 규범의 형성과 모색’이라는 대주제하 총 4부의 세션 진행
제1부: 심해저 개발규칙 협상과 전망
제2부: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동향과 쟁점 - 해양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제3부: 국제법 대학원생 포스터 세션
제4부: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제5.2차 유엔 플라스틱 정부간협상위원회 문안협상 | 2025년 8월 5일~14일 / 스위스 제네바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 개발을 위한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는 2025년 11월 제5.1차 회의의 속개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유해화학물질 규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등의 의제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임

BBNJ협정 발효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 2025년 8월 18일~29일 / 미국 뉴욕

- **주요 내용** 지난 2023년 6월에 채택된 BBNJ협정의 정식 발효에 대비하여 운영체계 및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차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회의 운용 규칙 및 절차, 하위기구 및 그 구성, 정보 공유 플랫폼(CHM), 재정 및 자금 조달 등에 관한 규칙·구조·운영 체계가 더 구체화 될 예정임